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업셋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406
------	------

발의일자 : 2023. 9. 5.

발 의 자 : 김용술, 업셋별의원(2명)

찬 성 자 : 장규권, 이인식의원

1. 제안이유

구민들이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사업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대한 근거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의 적용범위 확대(안 제7조제6호).
- 나.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의무사항으로 변경(안 제10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
- 2) 「건축법」 제53조의2

3)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2) 입법예고: 2023. 9. 6. ~ 2023. 9.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6.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예방강화구역 등에 대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제10조제1항 중 “구축할 수 있다”를 “구축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시행 2021. 11. 16.]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220호, 2021. 11. 1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원칙을 구체화시켜 제시한 지침 등을 말한다.
3.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따른 범죄를 말한다. <신설 2021.11.16>
4.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창호용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11.16>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영역성 강화를 위해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공간과 시설을 쉽게 인식하고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활동성 강화를 위해 주민의 교류 증대와 다양한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5.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3. 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4.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5. 방법시설 설치 지원 등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 <신설 2021.11.16>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11.16>

제7조의2(방법시설 설치지원)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법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은 서울금천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서울금천경찰서장이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16.]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신설 2018.11.9>

5. 제7조의2에 따른 방법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2021.11.16.>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전 제4호에서 이동 2018.11.9, 개정 2021.11.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건축위원회(이하 “구 건축위원회”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

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이 경우, 구 건축위원회 및 구 도시디자인위원회에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개정 2018.11.9.>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구 건축위원회 : 건축물에 대한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9.>

2.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 제8조제1항제1호 및 도시공간에 대한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9.>

제9조(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①위원회 심의사항의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을 기획·조정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실무협의회는 구의 범죄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팀장, 금천경찰서의 범죄예방 담당 부서의 장과 팀장으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실무협의회는 대표를 호선하며 실무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④실무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9.]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금천경찰서,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서울금천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과 분석에 관한 사항이 상호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8.11.9.>]

제11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와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11.9.]

제12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서울특별시 금천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중전 제10조에서 이동 <2018.11.9.>]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63조의6(건축물의 범죄예방)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한다)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6. 노유자시설
7. 수련시설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